

기관·시설의 기표소

✓ 기표소 설치 대상 기관·시설

거소투표신고를 수용하고 있는 병원·요양소·수용소·교도소·구치소 및 장애인거주시설

✓ 기표소 설치 대상 기관·시설

기관·시설의 장이 거소투표신고인에게 별도 안내 (해당 기관·시설의 장이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기표소 운영 일시 및 장소 등)

거소투표

✓ 거소투표 시 유의사항

-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.
- 거소투표하는 사람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.
- 선거인의 투표비밀을 침해하면 안됩니다.

✓ 거소투표 관련 위반 시 처벌규정

-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,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≧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(공직선거법 제247조)
-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·변조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 ≧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(공직선거법 제247조)



거소투표제도 안내



✓ 거소투표란?

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투표소에 갈 수 없거나 병원·요양소·수용소·교도소·구치소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✓ 신고기간

2022. 2. 9. ~ 2. 13. (5일간)

✓ 신고방법

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·시·군(읍·면·동 포함)의 장애인에게 2월 13일(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) 오후 6시까지 도착 되도록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

✓ 거소투표 절차



2022년 3월 9일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관·시설 기표소 투표 안내



